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0. 5.
제출자 : 이천시장

제안이유

이천시 사무중 조사·검사·점검·관리업무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관계
되지 아니하는 환경기초시설의 사무를 시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주요골자

가. 위탁대상시설의 범위 : 이천하수처리장, 장호원하수처리장, 위생처리장,
축산폐수공동처리장, 간이오수처리장

나. 민간위탁 시기(예정) : 2000년 8월

다. 수탁대상기관의 범위: 관련법률에 의한 대상기관

라. 수탁기관선정방법

- 계약방식 : P.Q심사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수탁자선정 :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격심사후 결정

마. 위탁기간 : 위·수탁협약서 작성에 따라 최초 3년이내 계약후 운영실적등이
우수할 경우 10년정도의 장기계약 유도

바. 위탁대상시설의 기구 및 인력조치사항

- 기구폐지 및 종사인력의 수탁기관 고용승계

- 충현원의 60%는 고용승계하고, 40%는 본청으로 이관 과원관리

- 민간위탁 시설 지도·감독 전담기구(1담당)신설

사. 협약서 주요 포함 사항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 필요성

○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시스템 개선

- 자치단체가 공무원을 통해 직접 사무를 처리하지 않고 이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사무를 처리함으로써
- 민간의 경영기법을 도입 낮은 행정비용으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공급
-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등의 환경기초시설 운영은 비권력적 시설관리 기능으로 민간참여시 전문성을 높일 수 있고, 인력 및 예산의 감축효과 도 수반할 수 있음.

○ 지자체의 단계별 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

- IMF시기와 맞물려 대두된 행정조직의 방만함과 비효율성에 대한 지자체의 단계별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
⇒ 현재 단계별 구조조정에 따른 이천시 2000년도 감축정원은 39명으로 환경사업소 민간위탁과 연계하여 추진중임

2. 위탁대상시설(환경사업소) 기본 현황

○ 시설 현황

시설명	소재지	사업비 (백만원)	일일처리 능력(톤)	비고 (가동일)
이천하수처리장	이천시 갈산동 720일원	25,883	30,000	'98. 5.31
장호원하수처리장	장호원읍 노탑리 427의 34	18,496	10,000	'98.12.29
위생처리장	이천시 갈산동 720	742	50	'87. 1. 7
축산폐수공동처리장	백사면 모전리 282-1의 10필자	2,164	190	'94. 3. 1
간이오수처리장	마장면 오천리 98-1	398	500	'92. 3.16

○ 운영비 현황

(99년도 기준, 단위:천원)

시설명	계	인건비	전력비	약품비	시설유지비	기타
계	2,190,104	950,910	289,264	96,104	459,799	394,027
이천하수 종말처리장	1,161,830	560,850	152,018	44,793	88,838	315,331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590,351	185,726	34,528	18,540	300,504	51,053
위생처리장	176,046	69,570	62,539	21,556	16,556	5,825
간이오수 처리장	117,841	67,329	9,230	-	40,469	813
장호원하수 종말처리장	144,036	67,435	30,949	11,215	13,432	21,005

○ 직원현황

· 정·현원현황

('2000년 5월 현재)

정원					현원									비고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직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직	청경	일용	
39	1	4	9	4	-	21	39	1	4	3	5	2	21	1	2	

· 처리장별 인력현황

구분	계	직급별								비고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직	청경	일용	
계	39	1	4	3	5	2	21	1	2	
이천하수처리장	18	1	2	2	2	-	9		2	
장호원하수처리장	9	-	1	-	2	2	3	1	-	
간이오수처리장	1	-	-	-	-	-	1	-	-	
위생 및 축산폐수처리장	11	-	1	1	1	-	8	-	-	

3. 민간위탁시기(예정) : 2000년 8월

- 위탁관리운영업체 선정입찰 : 6월
- 위탁관리운영에 따른 계약(협약서작성) : 7월
- 위탁관리운영 시설물 인계·인수 : 7월
- 위탁관리개시 : 8월

4. 수탁자선정방법

- 계약체결방법 : P.Q(사전자격심사)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낙찰자선정방법: 수탁기관 선정은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희망기관의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및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민간위탁운영경험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성인원 : 5~7인
 - 위원구성 : 관계공무원 및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
 - 심의사항 : 세부시행방침상 결정된 선정기준에 따라 수탁희망기관의 신청 서류와 사업계획서 심사 및 현장 방문등을 통해 적격자 심사 및 선정
- 위탁을 맡을 수 있는 기관 (하수도법령 및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령상의 기준에 맞는 기관)

《하수종말처리시설》

- 한국수자원공사(한국수자원공사법)
- 한국토지공사(한국토지공사법)
- 대한주택공사(대한주택공사법)
- 환경관리공단(환경관리공단법)
-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지방공기업법)
- 농어촌진흥공사(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환경관리공단출자법인(환경관리공단법)
- 토목건축공사업자(건설산업기본법)
- 수질오염방지시설업자(수질환경보전법)
- 당해시설물을 시공한자(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건설부문상하수도분야 및 환경부문 수질관리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인 법인(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분뇨·축산폐수처리시설〉

- 환경관리공단(환경관리공단법)
- 분뇨등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자, 분뇨처리시설등의 설계·시공업자중
 - 자본금(법인 : 2억5천만원이상, 개인 : 재산평가액5억이상)
 - 기술능력: 수질환경기사 또는 폐기물처리기사1인이상, 화공기사(화공·공업·화학분야)1인이상, 기계기사(일반·정밀·건설·공정설계)1인이상, 전기기사1인이상 보유자
- 수질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방지시설업자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수질관리분야 엔지니어링활동주체
-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운영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자

5. 위탁기간

-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의 초기상태임을 감안하여, 위·수탁협약서작성에 따라 초기 3년정도의 단기계약을 체결하고 향후 운영실적등이 우수할 경우 10년 정도의 장기계약 갱신 유도

6. 위탁조건

- 위탁사무의 내용, 재산, 기간, 비용등 세부사항은 상호위탁운영협약서에 의함
- 위탁사무의 적정이행여부 확인, 관리감독의 권한은 시에 귀속
- 위탁비용은 수탁업체로부터 당해연도 예산을 청구받아 관리감독부서에서 연간예산의 적정여부를 심의조정하여 송인
- 기존 운영인력의 고용승계

7. 위탁시설의 기구 및 인력 조치

- 기구폐지 및 정원감축
 - 기구 : 1소 4담당 → 폐지
 - 정원 : 39명 → 100%감축
- 종사인력(현원) 수탁기관 고용승계
 - 고용승계 : 60%(현원 39명 중 23명)
 - 과워관리 : 40%(현원 39명 중 16명)
- 민간위탁 시설 지도·감독 전담기구(1담당)신설

8. 협약서 주요내용

- 위탁재산의 세부내용
- 위탁업무 내용 및 처리방법
 - 위탁대상시설의 표시
 - 위탁대상업무의 내용
 - 종업원의 임용(사전 협의, 보수수준등)
 - 현장대리인
 - 근무·작업수칙
 - 긴급조치와 사고보고
 - 자재·경비부담 구분
 - 서류 및 장부비치
- 위탁기간 및 협약변경 사항
- 위탁관리비
 - 위탁관리비내역
 - 사안별 비용부담 주체
- 기계장치 및 시설물 유지관리와 수선
- 협약이행 보증금
- 재위탁에관한 사항
- 민원 및 사고발생시 보고·처리와 민·형사상 책임
- 사후관리를 위한 조사·감사·지시
- 위탁관리비의 지급청구 및 지급
 - 매월 또는 분기별·반기별 지급
- 업무상 기밀유지
- 협약해제
- 손해배상
- 인수·인계의 절차등
- 인력의 고용승계 사항등

【부록 1】 민간위탁의 법률적 검토

□ 민간위탁 근거 법률

○ 지방자치법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95조 제3항	제11조
<p>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 감사, 검정, 관리사무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범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①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중 조사, 감사, 검정, 관리사무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순 사실 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기타 국민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p>②행정기관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등 정기식·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p> <p>③행정기관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한 때에는 수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수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 정부조직법과 지방재정법

정부조직법	지방재정법
제6조 제3항	제109조 제2항
<p>③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중 조사·감사·심정·관리업무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범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①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에게 위탁하여 그 공공시설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p>

□ 수탁기관 설정(계약) 관련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계약의 방법)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p>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대등공평이 원칙인 바에 따라 계약당사자는 미리 협상을 통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쳐거나 수의계약에 이르 수 있다.</p>	<p>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특수성, 긴급성, 기타 국가안보목적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96.12.31]</p> <p>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96.12.31]</p> <p>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96.12.31]</p> <p>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등을 정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염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p>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기술·가격분리입찰)	
<p>제13조의3(기술·가격분리입찰) 반주청은 영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야 한다. [개정 97.8.25, 99.2.18, 99.12.6]</p> <p>1. 용역비가 5억원이상인 설계등 용역의 경우에는 별표 5 제1호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반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얻은 자를 선정한 후 이들에 세 기술제안서(입찰금액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를 제출하게 하고, 별표 5 제2호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우수업체부터 입찰금액 및 예정가격이내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한다.</p> <p>2. 설계비가 5억원이상인 건축설계의 경우에는 별표 7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우수업체부터 예정가격이내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한다.</p> <p>3. 용역비가 5억원이상인 설계 및 경량인 설계인 경우에는 이송 배송비와 입찰금액을 제출하지 않고 반주청이 낭비 공사여부 등을 감안하여 세사전 기초평가 기준에 의하여 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우수업체부터 입찰금액 및 예정가격이내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한다. [본조신설 99.10.12]</p>	

□ 환경기초시설별 위탁관련법 근거조항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축산폐수처리장
<p>■ 하수도법 제7조제3항</p> <p>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공공하수도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p>	<p>■ 오수·분뇨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p> <p>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한 분뇨처리시설·축산폐수공처리시설 및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운영을 관리·운영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 하수도법 시행령 제7조제3항</p> <p>③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2.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 3.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 4.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5.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6.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어촌 진흥공사 7. 하수도시설을 운영·관리할 능력이 있는 기관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관 8.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정하수도의 관리를 수탁할 수 있는 기관 	<p>■ 오수·분뇨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111조</p> <p>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9.8.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2. 분뇨등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분뇨처리시설등의 설계·시공업자 중 다음 각목의 자본금 또는 재산 및 기술능력을 보유한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자본금 또는 재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인인 경우 : 자본금 2억5천만원이상 (2) 개인인 경우 : 재산평가액 5억원이상 나. 기술능력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질환경기사 또는 폐기물처리기사 1인이상 (2) 화공기사(화공·공업화학분야) 1인이상 (3) 기계기사(일반·정밀·건설·공정설계분야) 1인이상 (4) 전기기사 1인이상 3. 수질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방지시설업자 4.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수질관리분야 엔지니어링활동주체 5.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운영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뇨처리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 또는 공중화장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민사자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운영을 위탁하여야 한다.</p>
<p>제7조의2(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업무의 위탁)</p> <p>법 제8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제7조제3항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다만, 제7조제3항제7호의 기관의 경우 환경부령관이 고시하는 기관에 한한다.[5]</p>	
<p>■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의2</p> <p>영 제7조제3항 제7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이 농법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한 법인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건축공사업자인 법인 3.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부문 상 하수도분야 및 환경부문 수질관리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인 법인 4.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업인 법인 	

【부록 2】 현행 환경사업소 운영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 문제점

○ 순환보직등 잊은 인사이동으로 기술적 인력 부족 및 전문기술 축적 미흡

- 현재 환경사업소 기술직인력(기능직 포함) 26명 중 12명이 근속기간 3년 미만(46.15%)

○ 공무원의 혐오시설 근무 기피

- 시소속 기관중 직원편성에 있어 기능직과 비정규직 비율이 높음.
- 환경사업소 전체직원 40명중 25명이 기능직과 청원경찰 및 일용직으로 구성되어 있음.(전체직원대비 62.5%)

○ 승진후 잠시 거쳐가는 대기장소로 인식하여 사명의식 결여

□ 해결방안

○ 위탁을 통한 운영상의 문제점 해결

※ 위탁을 통한 운영상의 문제점 해결 및 운영인력 감축과 예산(운영비) 절감의 추가 효과를 볼 수 있음.

구 분	작 영 관 리	민간위탁관리
기술인력 확보면	·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으로 적정운영 곤란	· 전문인력과 경험의 축적된 기술로 효율적 운영관리
시설물 유지관리면	· 고장 및 보수에 신속대응 불가	· 하자나 고장에 신속대응가능, 시설물 수명연장, 예산절감
근무 관리면	· 혐오시설로 인한 근무기피 현상	· 전문운영인력을 상주케함으로서 근무기피 완화
인력 관리면	· 소요인력의 비효율적 관리 (관리 및 실험인력의 충복)	· 시설물의 통합운영권리를 통한 인력관리(소요인력감축)
예산 관리면	· 일정한 예산에 맞추어 운영 하므로 예산 낭비요인 발생	· 처리시설의 운전 효율의 극대화를 도모하여 예산 절감

【부록 3】 민간위탁 타당성 용역결과

□ 용역개요

○ 수행기관 : (재)한국산업연구소

○ 수행사항

· 1차 : '99. 3. 3~ 6. 2(60일간)

- 과업대상시설물의 적정운영 형태 검토, 민간위탁수수료 산정, 계약관리 방안검토, 운영적정인력 산정등.

· 2차 : 2000. 4. 4~4. 21(18일간)

- 시설가동률 증가 및 예정가격 산출기준 변동에 따른 위탁수수료 재산정

□ 용역결과 요약

○ 이천시 환경기초시설(환경사업소)은 인력구성, 운영유지비 측면에서 타 지방자치단체의 유사시설 칙영시에 비교하여 적은 인력과 적은 비용으로 양호한 수질수준을 유지하는 운영실태를 보이고 있으나 민간위탁시 운영인원 15%, 예산대비 16%의 추가감축요인이 있음.

○ 향후의 환경기초시설 증설계획에 따라 인력증원이 요구되나 행정자 치부의 '신규인력 증원 불허'로 인력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됨.

※2단계 환경기초시설 건설계획

구 분	사업비(백만원)	시설용량(톤/일)	사업기간
이천하수처리장	34,770	30,000	1997~2005년
장호원하수처리장	25,498	22,000	"

⇒ 따라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실시를 통하여 시설운영에 따른 인력과 경비절감은 물론 민간의 다양한 기술과 축적화된 Know-how 등을 통해 수질관리에 최적을 기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됨.

□ 인력 및 운영비 분석결과

(단위 : 명, 천원)

대 안	시직영시 (2000년 기준)	민간위탁시	비 고
인력편성측면	40	34	△6(△15%)
경제적 측면	2,407,719	2,034,001	△373,718(△16%)